

(참고자료-참조6)

공공기관 지정업체 지정내역 LH LH

LH 한국토지주택공사 Korea L&H LH

수신처 : 고객관계 부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재워
(경북)
참 조 :
제 목 : 신남관교 북동아파트(A17-98)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권환 사정안내
1. 귀하의 거실에 붙여야 하도록 발송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신남관교 북동아파트(A17-98)는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거 2019. 9. 30일 자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10월 1일부터 임대차에 대한 우선변환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신청기간은, 2019. 10. 1일부터 2019. 10. 31일까지입니다.

가. 2019. 7 : 임대평가 의뢰 (LH → 영남시)
나. 2019. 8 : 분양권환 안내 및 우선분양권환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
다. 2019. 9 : 분양권환 계약 안내
라. 2019. 10. 1 ~ 2019. 9. 31 : 분양권환 계약제출

*** 공공주택법령 등 관계 법령이 개정 되어 있어 분양권환 계약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3. 특히라도 우선 분양권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님께서도 분양권환 계약기간 만료일(2019. 09. 30.) 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공사에 인도하셔야 하고, 그날과 동일 경우에는 분양권환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우선변환을 또는 우선 분양권환 계약제출일까지 LH고객센터 계약부수업권 관리소에 의한 주택임대차 전환대상(기분양대상)신청보증금을 납부하여, 해당기간 지급된 경우에는 자금 전 임대료(5.1.24)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되어, 그 납부는 임대보증금과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거 주택임대차 공사에 반환됩니다.

4. 아울러, 공공주택법령 제20조의 3 제2항에 의거 고객님께서 분양권환 계약기간 내 우선 분양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30일까지 양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도 있으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우리 공사는 고객님과 용만한 분양권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분양권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LH 경기지역본부 분양권환부 (031-250-6400, 829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